

배포 2026. 4. 23.(목) 14: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4. 23.(목)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지 면) 2026. 4. 23.(목) 국회 본회의 통과 시

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임용 시 겸직 허용하여 우수한 해외석학 유치 유도
- 지역대학 학생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구간을 8구간 확대

교육부는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평생교육법」 등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4. 23. 본회의 통과 법률 중 국정과제 주요 내용 >

법률명	주요내용	개정 후 효과
「교육공무원법」	·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원의 외국대학 겸직 근거 마련	·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 국·공립대학 전임교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
「평생교육법」	·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입학대상을 채용후보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확대	· 전문학사, 학사 외에 석·박사 학위까지 인정 가능 · 입학대상에 채용후보자, 사내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포함
「교원지위법」	·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 위원이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	· 심의 과정에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
「교육기본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권리·책임 이행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	·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수 있도록 역량 함양 지원
	· 국가/지자체가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및 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 수립	· 인공지능 시대에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과 윤리 확립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반 마련
「유아교육법」	·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 수립·시행 · 유아생활지도 필요 경비 지원 · 교사 자격에 보건/영양교사 추가	· 유치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실시	· 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생 주거실태 정기조사 근거 마련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폐교 용도 활용 확대 등의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무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관련 국정과제】 99.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원이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공무원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 교원의 관련 법령상 겸직 근거가 없어 대학이 해외 우수 인재를 초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교육·연구 역량이 뛰어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우수한 해외 석학 유치에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공무원이 필요시 연수휴직 기간을 나누어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수휴직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평생교육법(시행: 2027.1.17.)

【관련 국정과제】 99-2.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인공지능 융복합(AI+X) 인재 양성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첨단 분야 등 빠르게 변하는 산업계의 고급 인력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4조에 따라 2027년 1월 16일까지 유효한 한시조항으로, 교육부는 이번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사내대학·대학원의 입학 대상에 채용후보자*는 물론 사내대학·대학원의 장이 직무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업종·분야의 중소기업 재직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해당 기업과 채용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채용 예정인 자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현장 밀착형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성공 사례가 확산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1년)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폐교재산의 수익계약 대부·매각 등 특례 대상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폐교재산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활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폐교재산이 지역 여건에 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폐교 활용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폐교재산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관련 국정과제】 102-2. 교권보호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교권 보호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 교육기본법(시행: 공포 후 즉시)

【관련 국정과제】 102.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관련 국정과제】 99.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와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가 보호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 및 인공지능 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정과제 99번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자의 자녀 양육과 학교 협력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사·학생·학부모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민주적 학교 운영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모든 국민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유아교육법(시행: 공포 즉시 / 일부 조항 공포 후 6개월*)

* 제21조의4제4항, 제21조의5

【관련 국정과제】 101-3.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사 자격에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정례화된 조사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유아 사교육의 규모와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민원 처리, 유아 생활지도, 교사 자격 관련 필요 사항이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유치원의 교육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아의 성장과 발달단계에 맞는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영유아보육법(시행: 공포 후 즉시, 일부 조항 공포 후 6개월*)

* 제16조제5호·제6호·제8호, 제20조제4호, 제4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설립 목적에 영유아보육·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영유아보육·교육 정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 근무 결격 기간을 범죄의 종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였다.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자격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②뇌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로 구체화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 이행과 영유아보육·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결격 기간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 소재 대학 학생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8구간)’까지 확대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수도권에 비해 생활·교육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대학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대학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 고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주거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숙사 확충, 노후시설 개선 등 대학생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하여 학생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사의 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졸업자에게만 허용하는 개정 「약사법」 시행(2025.4.8.)에 맞추어, 고등교육법에서도 약학 교육과정에 대해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질 향상을 위한 점검·관리 체계의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0>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현장에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초·중등 단계의 다국어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그간 고등교육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특수외국어 교육을 초·중등학교 까지 확대하기 위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과 협의 하도록 명시하였다. 아울러, 초·중등학교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초·중등학교 단계부터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통해 이중언어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는 공포 후 3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교육비 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그간 ‘다문화 학생’으로 통칭되던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의 특정 학교 밀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여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미인가 국제학교 등과 같이 학교설립 인가 등을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참여 기회를 저해하고 경제적 피해 등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 「폐교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4.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10. 「특수외국어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담당 부서 <총괄>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관영 (044-203-6170)
		담당자	사무관	이일경 (044-203-6173)
<교육공무원법>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경 (044-203-6830)
		담당자	사무관	최윤정 (044-203-6938)
		책임자	과 장	장세은 (044-203-6480)
		담당자	사무관	채시은 (044-203-6497)
<평생교육법>	대학지원관 산학협력지원과	책임자	과 장	유희진 (044-203-6252)
		담당자	사무관	곽혜윤 (044-203-6261)
<폐교활용법>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지방교육재정과	책임자	과 장	권삼수 (044-203-6636)
		담당자	사무관	양준혁 (044-203-6641)
		담당자	사무관	안수미 (044-203-6642)
<교원지위법>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세은 (044-203-6480)
		담당자	사무관	민동영 (044-203-6494)
<교육기본법>	학교지원관 공교육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현정 (044-203-6730)
		담당자	사무관	오연희 (044-203-6690)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인공지능교육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주영 (044-203-7080)
		담당자	사무관	홍기욱 (044-203-7053)
<유아교육법>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영유아지원관 영유아교원지원과	책임자	팀 장	최원석 (044-203-7030)
		담당자	사무관	김민정 (044-203-7031)
		책임자	과 장	연수진 (044-203-7151)
		담당자	사무관	전상희 (044-203-7166)
			교육연구관	박강현 (044-203-7163)
<영유아보육법>	영유아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성근 (044-203-7202)

	영유아정책총괄과 영유아지원관 영유아교원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김주희 (044-203-7203)
		책임자	과 장	연수진 (044-203-7151)
		담당자	사무관	고은옥 (044-203-716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평생교육지원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044-203-6267)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애 (044-203-6268)
<고등교육법>	대학지원관	책임자	과 장	최문태 (044-203-7172)
	대학시설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선 (044-203-7181)
	대학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태경 (044-203-6830)
	대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진영 (044-203-6911)
<특수외국어 교육법>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책임자	과 장	안웅환 (044-203-6752)
		담당자	사무관	이지윤 (044-203-6757)
<초·중·등 교육법>	학생지원국 학생지원총괄과	책임자	과 장	나현주 (044-203-6521)
		담당자	사무관	박지애 (044-203-6197)
		담당자	사무관	김미희 (044-203-6522)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책임자	과 장	마소정 (044-203-6682)
		담당자	사무관	임동우 (044-203-6683)



붙임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9조의3(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이하 이 조에서 “외국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의2. (생략) 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 11. (생략) ②·③ (생략)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 -----. 1. ~ 6의2. (현행과 같음) 7. -----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8.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붙임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u>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u>을 설치·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연합체(이하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 기업연합체는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3.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제32조(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u>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u>을 설치·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따라 구성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 개발협의체(이하 “산업별 협의체”라 한다). 이 경우 산업별 협의체는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4.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종

②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2.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3.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4.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5. 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5. 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직무 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③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

	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내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첨단 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원은 이 법에 따른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대학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붙임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신설> <신설>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생략) ② 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제2조(정의) ----- ----- -. 1. ~ 8. (현행과 같음) 9. “통합지원시설”이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폐교재산이 속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 며,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③ 시·도 교육감이 「인구감소

<신 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
· 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
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
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
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인
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에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폐교
재산의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④ 시·도 교육감은 제3항에 따
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고시
한 경우 그 계획에 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

-----귀농어·귀촌 지
원시설, 통합지원시설, 주민공동
이용시설-----

계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
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
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
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
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
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
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귀
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
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
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
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
용하려는 경우

3. 4.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② -----

-----가격평
정 및 절차-----
-----.

③ -----

-----.

1. -----
-----소득증대시설, 귀농
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
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2. -----
-----공공체육시설, 귀농어·
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3.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복합시

④ (생략)

⑤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다. (생략)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삭 제>

나.·다. (현행과 같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3. · 4. (생략) <신설> <신설>	----- 3. · 4. (현행과 같음) 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폐교재산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4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② (생략)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 ----- ----- ----- ----- -----구성 및 운영-----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시·도교육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육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 ①·② (생략)

<신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생략)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생략) ② 교사는 <u>정교사(1급·2급)·준교사</u>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6(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현행 제21조의5와 같음)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u>정교사(1급·2급), 준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u>----- ----- ----- -----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9,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제3항 및 「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되어 근무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은 각각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초·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붙임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u>보육서비스</u> 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u>한국보육진흥원</u> (이하 “ <u>진흥원</u>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u>진흥원</u>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u> 2. <u>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서비스</u> 제공을 위한 지원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3. ~ 7. (생략)	제8조(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영유아 중심의 보육·교육 정책-----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② -----. 1. 영유아의 보육·교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2. 어린이집,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 보육·교육 서비스 ----- 3.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 체계 마련·운영에 관한 업무 4.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정서·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5. 영유아의 신체·건강·정서·심리·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6.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7. 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 10. ~ 14.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생략)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6. -----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7. (현행과 같음)

8. -----

-----1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9. (생략)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3. (생략) <신설>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생략)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1. (생략)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으로 정하는 기간이-- 9. (현행과 같음) 제20조(결격사유) ----- -----. 1~3. (현행과 같음) 4. 제48조제3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사유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	---

3. ~ 5. (생략) ②·③ (생략)	교직원의 제16조·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결격기간에 관한 정보의 관리 지원(보육교직원의 제46조·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자격재교부금지 기간 및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호·제6호 · 제8호, 제20조제4호, 제4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기간 및 자격재교부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호· 제6호·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 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관한 특례) 2022년 9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8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결격기간과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 재교부금지기간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자격 재교부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 범죄를 범하고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 중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한 자격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6호 중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한다.	

붙임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생략)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제3조제2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및 제3조제2호나목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대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015년 이전에 대출받은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평가 등) ① (생략)	제11조의2(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 <u>한의학 또는 간호학</u> 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 ----- ----- ----- ----- ----- -----한의학·간호학 또는 약학----- ----- ----- -----
<신설>	제11조의5(학생 주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개인정보(성명·성별·주소·학교명·학년 등을 말한다)를 수

	집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③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주거실태조사의 시기·대상·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0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학교</u> (이하 “ <u>학교</u> ”라 한다) 중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를 말한다. 5. “특수외국어 교원”은 「 <u>고등교육법</u> 」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u>학교에서</u>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학교</u> ----- ----- ----- -. 5. ----- 「 <u>초·중등교육법</u> 」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u>학교에서</u>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 <u>고등교육법</u> 」----- ----- <u>같은 법 제2조</u> 에 따른 <u>학교에서</u> -----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u>양성</u>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양성·활용</u> -----

④ (생략)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 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6. (생략)

<신설>

7. (생략)

③ (생략)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 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 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양성·활용-----

5. 6. (현행과 같음)

7.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 계획)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
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
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① 전
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② (생략)

<신설>

-----.

② -----제1항의
시행계획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u>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센터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지도·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u> <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④ 그 밖에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배치·운용,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붙임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u>다문화학생등</u> 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 <u>다문화학생등</u> ”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의2(<u>이주배경학생등</u> 에 대한 교육 지원) ① ----- ----- ----- <u>이주배경학생등</u>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의 장은 <u>다문화학생등</u> 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u>이주배경학생등</u> ----- ----- ----- -----.
④ 교육감은 <u>다문화학생등</u> 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 <u>이주배경학생등</u> ----- ----- -----. ----- -----.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	⑤ ----- <u>이주배</u>

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생 략)

② · ③ (생 략)

<신 설>

경학생등-----

-----.

⑥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할청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

	<u>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관할청은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 제목 중 “다문화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②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문화 학생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을 인 용한 것으로 본다.
--	---